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설) 시설 이용실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3항)
- 나. (신설) 체육시설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다. (신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
- 라. (신설) 시설 사용의 공정성 확보 및 독점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 바. (신설)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사. 사용 제한 및 위반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8조)
- 아. (신설) 신동생활체육공원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별표 2)
- 자. 용어, 문구 및 인용사항 정비(안 제8조, 제12조, 제1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사용현황 및 관리상태 등 이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5:00 ~ 22:00
2. 동절기(11월~2월) : 06:00 ~ 22:00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각 체육시설의 특성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3(통합예약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 및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예약현황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역주민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스포츠클럽법 제6조”를 “「스포츠클럽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행사”를 “체육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경기연습,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에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9조에 따라”를 “체육시설 사용”로 한다.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사용허가”로, “취소”를 “취소 또는 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5호) 중 “사용”을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허가조건 위반, 사용”으로, “위반, 허가조건 위반”을 “위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8조)제3항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신동생활체육공원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에 신동생활체육공원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범위(제2조 관련)

1. 전문체육시설

명 칭	위 치	기 능
박 정 희 체 육 관	구미시 박정희로 375-19 (광평동)	농구, 배구, 각종행사
구 미 시 복 합 스포 츠 센 터	구미시 박정희로 375-7 (광평동)	볼링, 배구, 농구 등, 각종행사
시 민 운 동 장 주 경 기 장	구미시 박정희로 375-22 (광평동)	육상, 축구, 각종행사
시 민 운 동 장 보 조 경 기 장	구미시 박정희로 375-20 (광평동)	육상, 축구, 각종행사
복 합 체 육 시 설	구미시 박정희로 375-20 (광평동)	인라인롤러, 투포환, 농구, 배드민턴, 체육회관 회의실 등
금 오 테 니 스 장	구미시 산책길 105 (남통동)	테니스 등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구미시 옥계2공단로3길 133 (구포동)	축구, 정구, 테니스, 농구, 족구, 각종행사
궁도장 (금오정)	구미시 3공단1로 219	궁도
고아시니어 스포츠파크	구미시 고아읍 황들길 30	배구, 게이트볼
선산체육관	구미시 선산읍 단계동길 252	배구, 핸드볼
신동생활체육공원	구미시 인동가산로 481-19	축구, 족구

2. 생활체육시설

명 칭	종 류 (종 목)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관할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실내·외 체육시설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박정희 체육관	주경기장	100,000원	300,000원	150,000원	400,000원
	보조경기장	50,000원	100,000원	80,000원	200,000원
구미시복합 스포츠센터	다목적경기장	80,000원	200,000원	120,000원	300,000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60,000원	100,000원	90,000원	200,000원
	필드	150,000원	250,000원	250,000원	350,000원
	행사	600,000원		900,000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트랙	40,000원	80,000원	65,000원	160,000원
	필드	80,000원	160,000원	160,000원	240,000원
	행사	400,000원		500,000원	
복합 체육시설	인라인롤러경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투포환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농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다목적경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금오 테니스장	실외(1면 기준)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실내(1면 기준)	15,000원	20,000원	20,000원	25,000원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	클레이코트(1면 기준)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축구장	주간	60,000원	80,000원	100,000원
		조기·야간	80,000원	120,000원	140,000원
	풋살장	주간	40,000원	50,000원	60,000원
		조기·야간	50,000원	60,000원	70,000원
고아시니어 스포츠파크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선산체육관	다목적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궁도장 (금오정)	대관료(1관, 4시간)	20,000원		30,000원	
신동생활 체육공원	축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② (생략) <u><신설></u>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사용현황 및 관리상태 등 이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신설></u>	<u>제5조의2(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하절기(3월~10월) : 05:00 ~ 22:00</u> <u>2. 동절기(11월~2월) : 06:00 ~ 22:00</u> <u>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각 체육시설의 특성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u>
<u><신설></u>	<u>제5조의3(통합예약시스템 운영)</u> <u>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 및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예약현황을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통</u>

제7조(사용허가) ①·② (생략)

<신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들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 5. (생략)

6.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 클럽의 등록)에 의한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7.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신설>

합예약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주민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1. ~ 5. (현행과 같음)

6. 「스포츠클럽법」 제6조---

7. -----
----- 체육행사

8. 경기연습, 개인연습 및 체력 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에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

8. (생략)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한 사용료는 그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취소할 경우 사용료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 마. (생략)

2. ~ 4. (생략)

② (생략)

<신설>

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

-----.

-----.

1. -----

체육시설 사용을 -----

--

가. ~ 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

제14조 ~ 제16조 (생 략)

제17조(허가 및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아니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익상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18조(허가 및 입장의 제한) ①

----- 사용허가를
----- 취소 또는 정지-----
-----.

1. (현행과 같음)

2.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
을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
할 때

4.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
경신청 없이 사용자 임의로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시설을
사용한 때

5. 사용 준수사항 위반, 허가조
건 위반 등 그 밖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8조(위탁운영) ①·② (생 략)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
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
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삭 제>

<삭 제>

3.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
허가조건 위반, 사용 ---- 위
반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
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 또는 정
지된 날부터 30일간 해당 체육
시설의 사용을 제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
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u>제19조</u> ~ <u>제21조</u> (생략)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 <u>제20조</u> ~ <u>제22조</u>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소 관 부 서		체육진흥과
입 안 자	과 장	김 혜 선
	팀 장	윤 종 원
	담 당 자	이 인 호 (480-4915)